

연대보증계약서

본 연대보증계약(서)[이하 “본 계약(서)”]은 2018년 5월 11일 아래 당사자 사이에서 체결된다.

(1) 채권자: 주식회사 테일리펀딩대부(이하 “채권자”)

(2) 채무자: 주식회사 (이하 “채무자”)

(3) 연대보증인: 김 (이하 “연대보증인”)

전문

채무자는 신규 분양대행계약 수주에 사업비 및 대행사 운영금 등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채권자와 2018년 5월 11일 대출약정금 합계 금 이십삼억원 (₩2,300,000,000)의 대출약정(서)[이하 “대출약정(서)”]라 하며, 이후 변경 또는 수정된 약정을 포함한다]을 체결하였다.

한편, 연대보증인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부담하는 피담보채무(아래에서 정의됨)를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하기로 약정하였다.

이에 본 계약의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본 계약을 체결한다.

제 1 조 정의

본 계약에서 사용된 용어는 본 계약에서 달리 정의되지 아니하는 한 대출약정에서 정의, 사용된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.

제 2 조 연대보증채무의 내용

- (1) 연대보증인은 대출약정서의 각 조항을 승인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내용으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다.
1. 채권자: 주식회사 데일리펀딩대부
 2. 채무자: 주식회사
 3. 피담보채무의 범위: 대출원리금 상환채무를 포함하여 채무자가 대출약정 기타 금융관련계약에 따라 또는 그와 관련하여 채권자에 현재 부담하고 있거나 장래 부담하게 될 각종 금전채무(연체이자 및 일체의 손해배상의무, 금융관련계약의 변경, 추가 및 대체된 채무를 포함)(이하 “피담보채무”). 단, 피담보채무의 범위는 대출약정금의 130%를 한도로 한다.
- (2) 연대보증인은 대출약정상 대출만기일이 도래하거나 채무자에게 기한이익상실 사유 또는 채무불이행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채권자가 요구하는 방법과 장소에서, 어떠한 공제나 원천징수 없이 즉시 이용 가능한 자금으로 대출원리금 전액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.
- (3) 연대보증인은 본 조 기재 연대보증채무의 내용은 한정근보증에 해당함을 확인한다.
- (4) 연대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최고·검색의 항변권 및 분별의 이익을 가지지 아니한다.
- (5) 연대보증인은 피담보채무의 기일 도래 또는 기한이익상실에 따라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상태에 도달하기 전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예금 기타의 채권에 의한 피담보채무와의 상계, 공제 기타 사유를 이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아니한다.
- (6) 연대보증인은 채권자에게 본 조 기재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도 채권자가 피담보채무를 전액 변제 받기 전까지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인한다.

이 약정이 체결된 증거로서 당사자들은 이 약정서 1부를 작성하고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채권자가 이 약정서 원본을, 나머지 당사자가 사본 1부씩을 각 보관하기로 하였다.

채무자:

주식회사 (법인등록번호: 110111-

서울특별시

대표이사 김



이 약정이 체결된 증거로서 당사자들은 이 약정서 1부를 작성하고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채권자가 이 약정서 원본을, 나머지 당사자가 사본 1부씩을 각 보관하기로 하였다.

연대보증인

김



서울특별시

주민등록번호: 780117-*****

* 본건 대출과 관련하여, 아래 사항은 차주가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항목	피보증채무의 금액	보증의 범위	연체이자율	보증기간
○ 십삼억원	이상의 주체에	18%	2018년 5월 11일 ~ 2018년 10월	

이 약정이 체결된 증거로서 당사자들은 이 약정서 1부를 작성하고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채권자가 이 약정서 원본을, 나머지 당사자가 사본 1부씩을 각 보관하기로 하였다.

채권자

주식회사 테일리펀딩대부

서울특별시 송파구 총민로 66, 제엘-7061-7064호(문정동, 가든파이브라이프동)

대표이사 이 해 우

